

귀족 구제대책으로 본 「조선귀족」의 실태

박희경*
wangfei7@hanyang.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昌福會의 조선귀족 구제대책 |
| 2. 1910-20년대 조선귀족의 재정 상태 | 5. 마치며 |
| 3. 朝鮮貴族會의 조선귀족 구제 사업 | |

主題語: 화족(Japanese peerage), 조선귀족(Joseon peerage), 조선귀족회(Joseon guijok-hwae), 창북회(Changbok-hwae), 구제대책(relief measures)

1. 들어가며

일제는 지배정책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에서 민중들이 느끼는 식민지배의 거부감을 줄이고 대한제국 체제와 연속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선보이는 통치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조선인 계층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일합방과 동시에 천황제 지배체제에 순응하며 일반 민중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 최상위 계층의 조선인 영입에 착수하여 1910년 8월 조선귀족을 만들었다. 조선 귀족은 일본의 화족령(華族令)과 같은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의 서작내규(敍爵內規)에 의해 관리되지만, 화족(華族)보다는 낮은 지위와 권리를 갖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특수한 신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조선귀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1910년대 수작상황 및 인물별 실태조사 위주로 많이 밝혀져 있다. 임종국(1989)이 일제강점기 35년간의 전체 조선귀족의 계보를 처음 밝히며 수작자와 습작자의 관계, 전체 귀족의 행적 등을 제시하였다.¹⁾ 학술적인 연구로는 심재욱(2004)이 매일신보의 1910년대 조선귀족 관련 게재 내용을 분석하여 식민지배 정책 과정에서 조선귀족을 어떻게 선전하고 이용하려 했으며, 이들은 또 어떻게 부합했는지 등을 밝힌 것이 처음이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1) 일본 화족은 1884년 제정된 화족령의 서작내규에 의해 궁내성 감독을 받는다. 반면 조선귀족은 1910년 조선귀족령의 서작내규로 관리 되지만 그 주체가 조선총독부이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제주 하는 귀족에 관한 건'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조선귀족을 관리하였다.

다.2)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 황실 및 친인척 관계, 이들이 일제와 유착한 행정 그에 따른 일제의 우대정책에 따라 나뉜 왕족, 왕공족(王公族), 조선귀족의 구분 등을 분석하였다. 이용창(2012)은 강점기 조선귀족의 수작 경위와 수작자의 행태를 조사하여 개인 별 사례 위주로 조선귀족을 언급하고 있다.3)

이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는 주로 조선귀족의 탄생 의미에 대한 조사와 조선귀족제도의 내규에 대한 개관, 조선귀족 개인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10년 수작 당시 조선귀족의 실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후 조선귀족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작 이후 조선귀족의 실태에 대해 다루더라도 주로 개인의 불행적 일탈과 가정 문제에 집중한 잡지, 기담집4) 등 가볍게 다룬 자료가 대부분이다. 즉, 조선귀족들 중 상당수가 수작 이후 불과 10여 년이 지나기 전에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나 대책에 주목한 학술적 연구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귀족의 수작 이후 경제 상태를 개괄하여 조선귀족의 실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한국학문헌연구소가 1985년 편찬한『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5)과 당시 발행된 신문6)에 게재된 조선귀족 관련 기사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본의 화족회(華族會)를 모델로 창립한 조선귀족회(朝鮮貴族會)의 구제 사업과 조선총독부가 만든 창복회(昌福會)의 조선귀족 구제대책을 살펴본다.

1920년대 들어 표면 위로 떠 오른 빈곤한 귀족들의 문제에 조선귀족 단체와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 당시 조선총독부가 귀족 구제대책을 마련하면서까지 빈곤한 조선귀족의 구제에 힘썼던 이유를 알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지금까지 조선귀족을 특권적 신분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만 하던 집단이란 시각과는 다른 실제 조선귀족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재욱(2004)「1910년대 ‘朝鮮貴族’의 實態 - 每日申報 기사를 중심으로」『史學研究』76, pp.231-265

3) 이용창(2012)「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한국독립운동사연구』43, pp.331-371

4) 전봉관(2006)『경성기담』살림, p.348

5) 『朝鮮貴族列傳』은 1910년 12월에 朝鮮研究會의 大村友之丞가 작성한 조선귀족 자료를 기본으로 韓國學文獻研究所가 1985년 旧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로 다시 발간하였다. 내용은 조선귀족들의 수작 경위와 수작 당시 역임했던 관직명, 출신 지역, 재산 정도 등이 기술된 것으로서 당시 조선귀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大村友之丞(1985)『韓國學文獻研究所編. 4社會篇, 朝鮮貴族列傳』亞細亞文化社, p.260

6) 1901년-1930년까지 발간된 『每日申報』, 『朝鮮中央日報』, 『조선신문』, 『동아일보』등을 활용한다. 신문은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민중에게 선전하고 전달하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이 시기 조선귀족의 상황을 파악 하는데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2. 1910-20년대 조선귀족의 재정 상태

조선귀족의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정한 서작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선정 이유에 대해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1910년 수작 첫해부터 1925년까지의 습작자를 포함해 조선귀족의 행적을 세밀하게 기록한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의 서문에서는 조선귀족의 선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왕가 말 조선귀족의 경력은 일한, 청러 사이의 외교관계 당사자 이외에는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 없고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비밀이 많아 그런 것으로써, 그 진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몹시 곤란한 상황에 있다.7)

위 내용으로 보면 조선에서 조선귀족으로 선정된 이유와 경력 등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의 남작 정한조에 대해 기록한 항목에서는 작위 선정 이유가 대략적으로 언급된다.

병합 당시에 조선귀족령은 왕공가의 근친 및 그 외척, 기타 친임관, 고등관 1등 이상 즉, 정2품 이상인 자로 엄격히 제한하며 조선의 명문대가 중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조선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8)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의 남작 정한조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은 조선귀족 수작표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아무리 명문대가, 양반가일지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귀족의 선정기준을 요약하자면 조선귀족은 왕족 중 왕공족(王公族)에 포함되지 않은 척족이며, 대한제국의 유력한 문벌 출신자, 일본 정부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결국 일제는 조선의 최고위 지배층 가운데 일본정부에 ‘협력’과 ‘공헌’ 정도에 따라 작위를 내렸으며, 그에 따라 77명의 조선귀족이 선정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 당시에 작위를 받은 후작6명, 백작3명, 자작22명, 남작45명 총 76명의 수작자와 1924년에 추가로 수작한 남작1명, 수작자의 작위를 계승한 81명의 습작자를 합하여 총 158명이 조선귀족으로서 작위를 받았지만 공, 후, 백, 자, 남작의 5작계 중 가장 상위인 공작 작위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존재하지

7)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6
8)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259

않는 특징을 보인다.9)

조선귀족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유력한 문벌가문 출신자이며 정2품 이상의 대한제국 관료를 역임한 사람들로써 그들은 조선에서 이미 상당한 재력이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귀족은 수작과 동시에 은사금을 받게 되며 은사금을 통해 최소 연 1,250엔에서 최대 25,000엔에 달하는 이자 수입을 받을 수 있었고 은사공채를 담보로 하면 이자 수입보다 큰 목돈을 얻을 수도 있었다.

아래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귀족들이 받은 은사공채 액은 상당했으며, 그 규모는 일반 민중들의 농사와 부역 등 노동력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실제로 1910년대 초 대부호들 가운데는 조선귀족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국 50만 엔 이상 자산가 중에는 이희, 이강 등의 황족을 비롯해 박영효, 이완용, 이재완, 송병준, 민영휘 등 조선귀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10)

<표1> 1910년 수작 시 지급된 은사공채 액11)

작위	은사공채(엔)	이름
후작	504,000	윤택영
	336,000	이재완
	280,000	박영효
	168,000	이재극, 이해승, 이해창
백작	150,000	이완용(李完用)
	120,000	민영린
	100,000	이지용
자작	100,000	고영희, 민병석, 박제순, 송병준, 이용직, 조중응
	50,000	권중현, 김성근, 김윤식, 민영규, 민영소, 민영휘, 윤택영, 임선준, 이근명, 이근택, 이병무, 이재곤, 이하영, 조민희
	30,000	이완용(李完鎔), 이기용

9) 조선귀족령 제3조와 제5조에서 ‘내지’ 華族과 동일한 등급 및 예우를 받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 조선귀족의 등급을 공, 후, 백, 자, 남작의 5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왕가의 종친, 척족인 박영효 등 6명에게 주어진 최고 등급은 후작으로서 조선에서는 공작은 없었다. 여기에 대해 상위의 효력을 갖는 천황의 詔書를 통해 ‘公族’이 공식화 하면서 하위 규정으로 8월 27일에 결정된 조선귀족령의 공작 조항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황실 아래 귀족 위라는 王公族의 탄생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공작 작위가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창(2012) 앞의 글, p.338

10) 『每日申報』(1911.07.28.)

1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9)「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현대문화사, p.273

남작	50,000	조희연, 장석주, 유길준
	25,000	김가진, 김병익, 김사준, 김사철, 김석진, 김영철, 김종환, 김준희, 김학진, 남정철, 민상호, 민영기, 민영달, 민중목, 민형식, 박기양, 박용대, 박제빈, 성기운, 윤용구, 윤용렬, 이근하, 이근상, 이근호, 이봉의, 이용원, 이용태, 이운용, 이재극, 이정로, 이종건, 이주영, 정낙용, 정한조, 조경호, 조동윤, 조동희, 조정구, 최석민, 한규설, 한창수, 홍순형
계	4,529,000	76명

조선귀족들은 조선의 최상위 계층의 유력한 문벌 출신자들로서 1910년대 수작 당시까지 재정상황은 열악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작위 수작 후에 거액의 은사공채 액이 지급되어 오히려 가계재정은 더욱 풍족하게 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대 말부터 귀족들의 부채나 범접가 문제 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접어들어 빈곤한 귀족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원인으로 먼저 수작과 동시에 받은 은사공채 액을 들 수 있다. 1910년 수작과 동시에 받은 은사공채 액은 강점기 직후에 발행한 3천만 엔에 대한 연리 5%의 이자로 발행된 국채증권으로서 정부 인가 없이는 양도 또는 저당이 금지된 것이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조선귀족 본인의 요청에 한하여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은 것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귀족의 자산을 보호하여 가계를 지탱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거래제한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이 은사공채는 조선귀족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은사공채는 액면 가격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 취급받았으며, 원금은 5년 거치 50년 이내 상환되는 것으로써 원금 전체의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자 또한 매년 2번에 나눠 지불되었다. 또한 액면가보다 당시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조선귀족의 가계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¹²⁾ 1920년대 후반 빈곤함이 심했던 가문에서는 실제로는 정부의 인가 없이도 공채증권을 할인하여 팔거나 담보로 용자를 얻는 것이 가능했으며 은사공채를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매도하는 모습도 목격된다.¹³⁾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은사공채는 채권으로서 발행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선귀족 품위 유지비로서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유로는 근대 개화문물들을 비롯한 새로운 소비문화의 등장이다. 경성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소비의 욕망은 더욱 커졌다. 서양식 건물을 건축하거

12) 심재욱(2004) 앞의 글, p.240

13) 『每日申報』(1911.07.28.)

나, 하인들에게 서양식 복장을 입히고, 또 새로운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개화문물을 소비하는 모습이 조선귀족들에게 많이 목격된다.¹⁴⁾ 이렇게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신흥문물을 소비하는 것은 조선귀족들에게도 곧 엄청난 지출증가를 의미하였다. 또한 조선귀족 주변에는 유희과 사기, 도박, 범죄가 모여들기 시작하며 재산을 잃은 경우도 보인다.¹⁵⁾

세 번째로 조선귀족의 사업투자의 실패가 빈곤을 초래한 것이다. 이왕직 장관이던 민영기의 사업투자 실패가 보여주듯이 조선귀족은 사업과 노동을 천시하던 유교 사회에서 교육받은 탓에 사업과 투자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었다.¹⁶⁾ 따라서 이들의 사업방식은 노동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닌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나 특권을 얻어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향이 짙었다. 독점권이나 특권이 투자의 전제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투자 자체가 정치 혹은 경제의 특권으로 이어질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조선귀족들이 운영한 회사들의 실제 영업이익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에서 송중헌, 이윤용, 민영기 등 귀족들의 사업투자 실패 사례 언급을 통해 노동을 천시하고 특권을 내세운 조선 귀족들의 사업경영은 실패로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할수록 조선귀족은 정치력을 동원하여 특권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재산만 잃는 모습이었다.¹⁷⁾

1925년 이후 『매일신보(每日申報)』가 게재한 조선귀족들의 재산 보유현황은 작위 소지자 가운데 총재산이 1,000엔 미만인 조선귀족이 12명이었고, 1만 엔 미만인 자는 26명으로 나타난다. 1만 엔 미만인 자 중 9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⁸⁾ 조선귀족은 25,000엔에서 50만 엔에 달하는 거액의 은사공채 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귀족이 조사 되었다는 것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은사공채 액의 실제 가치가 보이는 것보다 적었던 것이며 조선귀족의 재산 상황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빈곤하였음을 의미한다.

1927년 『매일신보(每日申報)』는 기사를 통해 조선귀족의 재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

14) 대원군의 손자이며 이재면의 아들이었던 이준용의 경우는 왕공족에 해당하는 만큼 후작 위에 존재하는 계급이었다. 따라서 은사금을 포함한 재력은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준용은 무분별한 소비로 이미 상당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p.20-22

15) 후작 이해창은 몇 명의 사기꾼들이 이해창의 장남 이덕주를 속여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도록 함으로써 8,000엔이나 10,000엔짜리 어음을 발행한 다음 수수료로 4할을 떼고 돈을 빌렸다. 1만 5천 엔 정도를 빌렸지만, 이덕주는 4,000여 엔 정도를 주색과 뇌물로 썼고 나머지는 모두 사기꾼들에게 들어가게 된다.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p.40-42

16) 민영기는 탁지부 대신, 회계원경,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로 상당한 부를 쌓았다. 남작이었다가 이왕직 장관이 되면서 자작으로 승작했던 그는 1910-20년대 토지사업, 농림주식회사에 투자하다 실패를 거듭했다.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p.210-211

17) 송중헌의 조선 농업주식회사가 남대문시장의 운영권을 획득한 것이나 임야와 갯벌 등 미간지를 불하받았던 것, 민영기 역시 이런 특혜를 노리고 농림주식회사를 설립했던 것, 이윤용이 조선 인삼 주식회사를 설립해 홍삼 독점권을 노렸던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105

18) 『每日申報』(1925.12.07.)

였다.¹⁹⁾ 1,000만엔 이상인 자가 1명, 100만엔 미만인 4명, 10만엔 이상에서 20만엔 사이가 10명, 10만엔 미만인 7명, 5만엔 미만인 10명, ‘부채’를 가진이가 2명, ‘다액부채’를 가진이가 4명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1925년 조사 때 없었던 ‘부채’와 ‘다액부채’를 가진 조선귀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재산을 보유한 귀족들도 대다수가 자산 유지에 실패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2년 뒤인 1929년에는 40여 명의 귀족이 파산에 이르게 된다.²⁰⁾ 조선귀족으로서의 최소 품위 유지비인 5만 엔 이상의 재산²¹⁾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에 대해서도 당시 조선귀족들의 일반적 지출 규모를 생각한다면 만성적인 적자에 빠져 결국 빈곤하게 되었던 것으로, 조선귀족의 1910년 무렵 보유한 재산만으로는 조선귀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실상이었다.

3. 朝鮮貴族會의 조선귀족 구제 사업

1910년 말 무렵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조선귀족들이 나타나자 이에 조선귀족회는 작위 유지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빈곤한 조선귀족을 구제할 대책을 고안하기에 이른다.

이에 빈곤한 조선귀족 구제대책으로 조선귀족회 단체가 경제활동을 벌여 직접적으로 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조선귀족 구제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 두드러지는 조선귀족회의 빈곤 구제대책 사업이 양잠업과 식림 사업의 경영이다.

조선총독부는 강점 초기부터 조선귀족이 산업을 진흥시켜 일반 민중들에게 노동 의식을 심어주고 농가 소득 이외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재정이 확충되길 원했다. 덧붙여 몰락한 조선귀족의 구제 방안 마련책으로서도 이런 역할을 조선귀족회가 술선하여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²²⁾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조선귀족회 측은 반응하여 다수의 귀족이 귀족회관에서 당시 양잠의 장려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²³⁾ 이후 양잠의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잠업전습소를 설치하는데 이때 조선귀족회에서 자본금 4만 원을 모아 경성에 한성 잠업전습소를 설치한다.²⁴⁾ 이 전습소는 규모가 확대되어 양잠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19) 『每日申報』(1927.02.11.)

20) 『每日申報』(1929.07.27.)

21) 조선귀족의 최저 품위 유지비가 5만 엔으로 보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창복회를 통해 곤궁한 귀족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때 재산이 5만 엔 미만인 자가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22) 조선총독부 編, 박찬승 김민석 옮김(2018)『조선총독부 30년사 上』민속원, pp.13-15

23) 『每日申報』(1911.06.09)

일본의 군마현의 농민 10명을 이주시켜 잡업에 종사시키는 등 직조업 사업은 확충 일로를 보이게 된다. 처음 배우로 오는 학생이 19명이었으나 점차 47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습소 이외에서 1,200여 석의 고치를 매수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한성 잡업전습소 설치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서 양잠의 수익을 확인한 조선귀족회는 조선귀족의 구제대책으로 가내 양잠경영을 통해 가계를 진흥시키면서 동시에 조선인들에게 부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입의 증대를 꾀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귀족회의 노력으로 인해 가업을 통한 수입이 없거나, 재산을 잃은 조선귀족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양잠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1910년 말부터 민영휘, 한창수, 조중웅, 민영소, 민영기, 이지용, 송병준 등이 기업으로 양잠을 시작한 결과 1,349에서 1,740여 석으로 고치가 증수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양잠 사업에서 수익이 나자 양잠을 위해 많은 주변 인사들이 양잠 산업장을 참관하며 양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성공에 힘입어 조선귀족회는 이후 1911년 12월에 개성에 잡업협회를 설립하고 양잠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⁶⁾ 양잠을 통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앞서 시행한 조선귀족들에 그치지 않고 은사공채 액이 100,000엔이던 자작 이용직의 경우에도 양잠 사업에 참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아 당시 조선귀족들이 양잠을 통한 경제활동에 상당히 본격적으로 임했으며 조선귀족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⁷⁾

조선귀족회의 이러한 사업투자 행위는 이를 통해 빈곤한 조선귀족의 경제적 자립을 키우는 데 물론 목적을 두고 시행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조선 민중들에게 노동과 식산을 직접 행하는, 즉 조선귀족으로서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는 효과도 염두에 두고 벌인 사업인 것이다.²⁸⁾

게다가 조선귀족회는 양잠업 이외에 식림 사업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조선귀족 개개인의 활동을 통해 가계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조선귀족회의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식림 사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조선귀족회는 조선임업 조합인 보식원(普植園)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1913년 4월부터 조선귀족회장 박영효 외 7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예연구회에 조선귀족회 회원 3명이 추가 참여하

24) 『毎日申報』(1911.01.05.)

25) 『毎日申報』(1910.11.03.)

26) 『毎日申報』(1911.12.09.)

27)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p.85-87

28) 조선귀족회의 설립 취지는 ‘황실의 번영(藩屏)이 되어 충의를 다하며 품성을 다스려 민중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설립 취지를 보더라도 귀족회의 대표적인 활동은 천황에게 받은 ‘보상’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조선귀족 구제 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빈곤함이 빈번해지자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귀족의 존립 여부에 대한 의견 안이 나오자 조선귀족의 경제적 자립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심재욱(2004) 앞의 글, p.244

여 자본금이 50만 원으로 확충된 입업조합이다. 처음 원예연구회의 출자 목표보다 지역, 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조선의 황폐한 산림과 들판을 이용하여 산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통해 일반에게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조선귀족의 품위유지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조선귀족회가 설립한 것이다.²⁹⁾

특히 조선귀족회가 이 식림 산업에 가장 힘을 쏟았던 이유는 당시에 개간사업과 관개 사업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으며, 광산업은 경험과 기술이 없어 도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으로, 장기적이며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중에 조선에서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것이 입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선택한 식림 산업은 그 범위가 경성을 벗어나 전국 각지에 설치되면서 확대일로를 걷게 된다. 1915년 2월에는 부산 해운대 일대 지역에 자본금 10만 원의 회사를 조직하게 되고, 1915년 5월에는 시흥군에 보식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³⁰⁾ 이처럼 조선귀족회는 보식원의 확장으로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으며 회장 박영효를 비롯하여 조선귀족들이 출자금을 회수하는 모습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혜를 받은 조선귀족 명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선귀족회는 식림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조선귀족회에서 판단한 빈곤 귀족들에게 지급한다.³¹⁾

조선귀족회는 조선귀족을 대표하는 단체이었던 만큼 조선귀족의 경제적 빈곤에서 과장된 사회적 지위의 실추를 막아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 당시 조선귀족은 정부의 명예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상당한 품위유지 재산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 은사공채의 이자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이조차도 재원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귀족들이 많았다. 따라서 조선귀족회는 조선귀족들이 영구히 세습할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조업과 입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양잠산업과 식림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선귀족회는 빈곤한 귀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지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귀족들의 경제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조선귀족회의 이런 사업에의 투자는 조선귀족을 구제할 재원 확보에는 어느 정도 일조하게 되지만, 빈곤하여 이미 몰락한 귀족 모두를 지속해서 구제할 재원 마련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귀족회는 이왕직 소유의 창경궁과 조선귀족회관을 매각하여 150만 엔을 확보하고 이를 궁핍한 귀족들의 구제에 사용해 달라는 청원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기에 이른다.³²⁾

29) 『每日申報』(1913.02.01.)

30) 『每日申報』(1915.05.31.)

31) 『每日申報』(1915.10.23.)

32) 『조선신문』(1925.07.09.)

4. 昌福會의 조선귀족 구제대책

조선귀족들의 사업투자의 실패와 개화문물의 소비, 귀족으로서의 과도한 품위 유지비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귀족들이 우선 적으로 구제받았던 곳은 이왕직이었다.³³⁾ 그러나 1920년대 초 이왕직의 연간 예산 180만 엔 중 가난한 귀족 구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10만에서 13만 엔에 달하게 되자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왕직이 귀족들의 부채 정리를 돕는 것을 금지하면서 귀족들의 곤궁함을 구제할 방법을 새로이 모색하였다.

우선 일본의 화족세습재산특권(華族世襲財産特權)³⁴⁾을 그대로 차용하여 구상한 귀족 세습 재산 보호령 제정을 추진하여 1927년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을 공포하였다.³⁵⁾ 그러나 조선귀족 세습재산보호령이 재산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자³⁶⁾ 전반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조선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는 조선귀족이 이미 소유한 재산, 세습한 재산 보호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며 직접적이고 지속해서 곤궁한 조선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28년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정무총감이 조선귀족을 구제할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도쿄 제국의회에서 1929년 3월 조선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250만 엔을 예산외 국고부담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³⁷⁾ 일본 내각이 긴급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귀족을 구제할 재정 처리가 계속 미뤄지긴 하였지만, 요청을 시작한 후 5개월이 지난 8월에는 시행이 결정되어 1929년 9월 28일 국채로 총당된 250만 엔의 자금으로 조선귀족들의 구제 자금을 지원할 재단법인 창북회가 설립하게 된다.³⁸⁾

33) 김명수(2016)『1915~1921년도 구황실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장서각』35, p.35

34) 華族世襲財産特權은 1886년 시행된 것으로 세습한 화족의 재산을 차압하여 경매에 붙일 수 없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세습재산에 의한 순이익의 3분의 2도 이와 같이 경매에 붙일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 당시 일본에서도 화족의 경제적 몰락으로 사회적 체면도 잃고, 작위도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화족회의 수장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만든 화족 구제정책 중 하나이다. 大久保利謙(1991)『華族制の創出』吉川弘文館, pp.266-270

35) 『동아일보』(1927.02.10.)

36)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은 세습재산의 범위를 조선에 있는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작위를 가진 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세습재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이 있다. 지정된 세습재산 자체나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을 얻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다. 일본 화족의 재산 상속은 작위를 세습하는 양사자(養嗣子) 이외에도 부인, 딸 등에게도 재산이 나뉘 지지만, 조선에서는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 상속되는 구조 속에서 조선귀족 가문의 재산을 세습재산령으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1928년 조선귀족보호자금령이 공포되지만 이조차도 뚜렷한 성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기훈(2009) 앞의 글, pp.355-356

37) 『每日申報』(1929.03.23.)

38) 일본 국고가 사용되었던 이유로 창북회장 및 관리 감독은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인은 조선귀족회 회장 박영효만이 포함되었다. 『每日申報』(1929.09.29.)

조선총독부의 창복회 설립 취지는 처음부터 곤궁한 조선귀족에게 확고하면서 안정적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자산 250만 엔의 기금과 연간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선귀족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1929년 12월부터 곤궁한 조선귀족 구제대책을 행하기 시작한다.³⁹⁾

창복회의 조선귀족 구제대책 방식으로는 첫 번째 조선귀족들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조선귀족의 자녀 학비로 쓸 경우라는 것과 부채를 탕감한다는 내용을 보증인을 통해 증명할 때만 해당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조선귀족으로서 그 가계가 곤궁한 자에게 매달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해당 귀족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이 5만 엔 미만자에게 교부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⁴⁰⁾ 창복회의 세부 규정에는 매달 후작 300엔, 백작 250엔, 자작 200엔, 남작 150엔 이내에서 교부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명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 그 이유는 재난이나 질병, 사망 등을 당한 귀족들에게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추가로 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특별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작위별 최대 지급금액으로써 매월 교부되는 금액은 명시한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

<표2> 작위별 창복회 교부금액⁴¹⁾

작위	성명	명수	월교부금
후작	이재완, 이해창	2명	250엔
백작	이영주	1명	200엔
자작	이규원, 조민희, 이완용(李完鎔), 이기용, 민충식, 조대호, 이충세, 임선재, 민병삼, 박부양	10명	170엔
남작	김종한, 민형식, 박기양, 이원호, 조동희, 이규환, 남장희, 정천모, 김덕한, 이완중, 장인원, 이능세, 김영주, 이중환, 성주경, 민건식, 박경달, 민규현, 최정원, 조중구	20명	150엔
계		33명	770엔

39) 1929년 11월 29일 기금 250만 엔을 일본 국고에서 받은 후 그 금액을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상업은행 및 한성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연간 약 12만 5천 엔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기게 된다. 『每日申報』(1929.12.04.)

40) 조선귀족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면 5%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었다. 부채탕감을 신청한 조선귀족은 총 14명이었다. 『동아일보』(1929.12.28.)

41) 『朝鮮中央日報』(1933.11.01.)

<표2>는 1929년 12월부터 1932년 말까지 창북회 교부금 수혜자로서 조선귀족 33명이 받았다. 42) 창북회 세부 지급 규정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곤궁한 조선귀족에게는 안정적 수입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매월 지급된 교부금 이야말로 조선귀족 구제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곤궁한 귀족들에게 재정 자립도를 만들어 조선귀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구제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1920년대에 5만 엔은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5만 엔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보다 사정이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된 조선귀족들에게는 매달 생활비로 교부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실제로 교부금을 받은 남작 조동회는 1918년 자산을 모두 잃고 파산을 신청하자 조선귀족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선귀족령 제8조(43)에 의해 조선귀족 예우가 정지되었다. 그 후 1930년 1월부터 창북회 교부금 150엔을 지급받아 조선귀족 예우 정지가 해제되어 1934년 사망 당시까지 작위를 유지하게 된다. 44) 또 남작 이규환은 아버지 남작 이주영이 사망하자 1918년 2월 남작 작위를 세습하였다. 이후 연이은 사업투자 실패로 경주 일대의 토지를 잃고 가계재정이 어려워지자 창북회로부터 1930년 1월부터 교부금 150엔을 받아 사망까지 작위를 유지한다. 45) 이와 같은 사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창북회 교부금을 받은 33인의 조선귀족에게 비슷하게 목격되는 상황이다. 창북회 교부금을 받은 33인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의 누적 수치로서 조선귀족 전체 158명에서 33인의 수혜자를 단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창북회의 구제대책 시행 이래 자산 5만 엔 미만의 빈곤한 조선귀족 가계를 파악할 수는 있다. 심지어 앞장에서 제시한 5만~10만 엔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된 박기양, 이재각, 민충식, 이해창, 박부양, 등도 모두 자산 유지에 실패하여 창북회의 교부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귀족의 곤궁함은 작위 예우 정지 사유에 해당할 만큼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총독부가 창북회를 통해 곤궁한 조선귀족에게 교부금을 지급한 이유는 곧 조선귀족이 귀족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귀족의 체면에 관한 사고를 막고 예우가 정지된 귀족들의 작위를 복직시키기 위함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창북회를 설립하며 조선귀족이 유지되어 새로운 시정의 효과를 민중에게 계속해서 전시해 주길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귀족은 빈곤함을 감추고 품위를 잃지 않는 생활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귀족에게 지급되었던 창북회 교부금은 조선 일반 민중들의

42) 『朝鮮中央日報』(1933.11.01.)

43) 조선귀족령 제8조 1항 ‘유작자 또는 전2조의 예우를 받는 자가 신체 또는 정신에 중환이 있거나 귀족의 체면에 관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중환 또는 사고가 중지될 때까지 예우를 받을 수 없다.’

44)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p.170-172

45) 大村友之丞(1985) 앞의 글, p.262

수입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빈곤함을 떠올릴 수 없는 금액이다.⁴⁶⁾ 창북회의 교부금 지급은 국가가 행하는 사회사업 빈민구휼 정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즉, 오로지 조선 귀족들이 빈곤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으로써 조선귀족 집단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대책인 것이다.

5. 마치며

본고는 일제 강점기 발행된 신문자료와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을 참고하여 조선귀족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중 1910년 수작 당시와는 다르게 1910년 말 무렵부터 조선귀족의 재정 상태가 곤궁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구제대책의 실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조선귀족을 특권적 신분을 통해 경제적으로 운택한 삶을 누리기만 하던 집단이란 시각과는 다른 실제 조선귀족의 빈곤한 실상을 재조명하였다.

조선귀족은 조선의 유력 문벌 출신 중에서 한일합방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이 작위를 받은 경우로서 이들은 1910년 수작 당시 상당한 재력가들이었다. 여기에 수작 후에 받은 은사공채액이 더해져 천만 엔 이상의 자산 귀족도 존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10년 말 무렵부터 빈곤한 조선귀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로 첫 번째 수작 당시 받은 은사공채의 액면가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평가되는 가치가 적었다는 점, 두 번째로 조선귀족들은 개화기를 지나며 새로운 소비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계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를 자행했다는 점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노동을 천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조선귀족은 사업에 적합하도록 교육받은 인물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투자한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1910년 말 이후 조선귀족들은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조선귀족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귀족에게 은사금을 내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조선귀족들로 하여금 조선에서 산업개발 등의 경제적 행위에 앞장서게 하여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고 새로운 시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제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만든 조선귀족의 빈곤함은 조선총독부의 시정 정책

46) 조선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았던 보통 학교 선생님의 평균 월급이 1930년 53엔이었고 1941년도에도 55엔이었다. 교부금을 가장 적게 받은 남작이라고 해도 교사들의 평균 월급 3배에 이르는 돈을 매달 받았다. 이기훈(2009) 앞의 글, p.360

에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선귀족의 구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대응책을 마련 하였으며, 조선귀족회도 양잠업과 식림사업을 벌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발견 되었다.

본고는 1910년 말 이후의 조선귀족 관련 신문자료를 찾아 조선귀족에게 지급한 구제금이 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조선귀족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소수의 특권계급으로 서 광복 이후까지 경제적으로 운택한 집단이었다는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신문자료만으로는 조선귀족들의 구제대책을 단편 적 사례를 통해 추론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기업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한 시점에 서 철도회사 등 기업과 조선귀족이 교류한 구체적인 행정문서나 기업 자료를 들어 보완한다 면 1920년 무렵 이후 조선귀족들의 실상을 보다 풍부하게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동안의 조선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행적’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집단 으로서 조선귀족에 대해 규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조선귀족회의 구제 사업과 창복회를 통한 조선귀족 구제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조선귀족이란 집단에 관한 연구에 본고가 일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 조선총독부 編, 박찬승 김민석 외 옮김(2018)『조선총독부 30년사 上』민속원
- 김명수(2016)「1915~1921년도 구황실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장서각』35, 한국학중앙연구원
- 심재욱(2004)「1910년대 ‘朝鮮貴族’의 實態 - 毎日申報 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76, 한국사학회
- 이기훈(2009)「1920-30년대 조선귀족의 경제상황과 조선총독부의 귀족정책」『역사문제연구』21, 역사문제연
구소
- 이용창(2009)「1910년대 일제의 ‘친일파’ 육성책;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한국독립운동사연구』31,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 (2012)「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한국독립운동사연구』43, 독립기념관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 임종국(1994)「일제하 작위 취득상속자 135인 売国전모」반민족문제연구소『아세아문화사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編(2009)「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현대문화사
- 大久保利謙(1991)『華族制の創出』吉川弘文館
- 大村友之丞(1985)『韓國學文獻研究所 編.4社會篇 ;朝鮮貴族列伝』亜細亞文化社

<신문자료>

『毎日申報』

『朝鮮中央日報』

『조선일보』

『동아일보』

논문투고일 : 2020년 01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0년 02월 05일

2차 수정일 : 2020년 0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7일

 <要旨>

귀족 구제대책으로 본 「조선귀족」의 실태

박희경

기존의 조선귀족 연구는 개인별 ‘행적’ 중심이거나 수작경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1910년 수작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귀족은 1910년에서 1945년 광복 때까지 조선에 있었던 계급으로서 존재 시기의 전반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작 1910년 말 무렵부터 그 이후의 조선귀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귀족열전 자료와 강점기 발행된 신문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조선귀족 관련 게재 내용을 살펴 여기에서 조선귀족의 재정 상황의 특이점을 발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20년대 들어 1910년 수작 당시 받은 막대한 은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귀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로는 은사공채 액의 경제적 가치 절하와 새로운 개화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노동을 천시하는 유교 교육을 받고, 특권을 통한 이권 추구에 집중한 조선귀족들의 사업투자 실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朝鮮貴族會와 昌福會를 통해 빈곤한 귀족을 구제할 대책들이 행해짐으로써 조선귀족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지 않고 조선귀족으로서의 품위유지가 가능해진다.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Joseon peerage
 through the relief measures

Park, Hui-Kyoung

Previous research on Joseon peerage was often focused on the circumstances of 1910's ordination, as it wa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behavior' or on how the work was conducted. As a class that was in Joseon from 1910 to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entire period of existence should be studied, but research on Joseon peerage since the 1920s is lacking.

Therefore, we want to examine the peculiaritie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Joseon peer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Joseon peerage, which can be found in this paper. In particular, in the 1920s, despite the huge amount of a Royal bounty that was received during the 1910s, the poor aristocracy was to reduce the economic value of the a Royal bounty, indiscriminate consumption of new enlightenment materials, and failed business investments by the Joseon peerage who received Confucian education that belittled labor. However, measures to rescue the poor aristocrat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use of both the Joseon gujjok-hwae and the Changbok-hwae, so that the Joseon peerage can be maintained as a Joseon peerage without being economically.